

'18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·접수 안내서

□ 신청절차 [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, 우편 또는 방문 신청]

- 내국인 구인노력(워크넷 www.work.go.kr) 후 신청서류 제출
 - 워크넷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(14일 이후)을 한 업체만 신청 가능
 - 14일 미경과 업체는 베틀시장, 교자로 등 일간지 게재 후(7일 이후) 신청 가능(워크넷 병행)

□ 신청서류 (fes.kbiz.or.kr “외국인력정보망” → 정보광장 → 각종서식 참조)

-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
- ③ 위임장,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

□ 배정방법 : 점수제

- 기본항목(사업장 규모 대비 외국인 고용인원, 재고용 만료자수 등)에 따른 기본 점수 및
가점항목(우수기숙사 설치, 사업주 교육 이수 등)과 감점항목(출국만기보험 체납, 산재은폐 사업장 등)으로 채점

□ 대상국가 : 16개국 [인도네시아, 필리핀, 네팔 등(송출국 사정에 따라 신청가능국가 변동)]

□ 외국인근로자(E-9) 고용허용 인원

내국인 피보험자 수	외국인 고용 총한도	신규 한도
1명 ~ 5명	5명 이하	3명
6명 ~ 10명	7명 이하	
11명 ~ 30명	10명 이하	4명
31명 ~ 50명	12명 이하	
51명 ~ 100명	15명 이하	5명
101명 ~ 150명	20명 이하	
151명 ~ 200명	25명 이하	6명
201명 ~ 300명	30명 이하	
301명 이상	40명 이하	

※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(3개월 평균)이 1인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

※ 부리산업(부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부리산업증명서 제출시)은 고용허용인원의 20%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며,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

- 국가부리산업진흥센터 TEL : 02-2183-1646 (www.kpic.re.kr)

※ 인력부족업종* 및 지방소재기업은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의 20% 추가고용 허용

* (10)식료품 제조업, (22)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, (25)금속가공제품 제조업 : 기계 및 가구 제외,
(29)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, (30)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, (31)기타 운송장비 제조업

□ 신청·접수 및 상담처

지 역	전 화	팩 스	지 역	전 화	팩 스
본 부	(02)2124-3284, 4390-3	(02)786-2201 (02)786-3717	경기지역본부	(031)254-4833	(031)259-7810 (0504)926-0119
			안산지부	(031)492-2576	(031)492-2594
			강원지역본부	(033)241-0012	(033)241-0015
부산울산 지역본부	(051)861-9373	(051)637-2066 (051)637-2067	경기북부지역본부	(031)853-5504	(031)851-2862
대구경북 지역본부	(053)524-2507	(053)524-2117 (053)524-2504	충북 지역본부	(043)236-7081	(043)236-4004 (043)236-7084
인천 지역본부	(032)437-8714	(032)232-7872	전북 지역본부	(063)214-6606	(063)214-5166
부천지부	(032)326-2430	(032)234-2813			
광주전남 지역본부	(062)955-9966	(062)951-9559 (062)951-9966	경남 지역본부	(055)281-2305	(055)212-1170
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	(042)864-0901	(042)864-0902 (042)864-0933	제주 지역본부	(064)752-8576	(064)757-5671 (064)757-5673
전안지부	(041)622-3824	(041)622-3826			

KBIZ 중소기업중앙회

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10% 감액 적용 불가 안내

수습기간 최저임금 10% 감액 적용과 관련하여,

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 - 23호에 따라,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10% 감액 적용 (3개월 이내)이 불가하니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채용하고 있는 (E-9)비자 외국인근로자는 단순노무직임

최저임금법 제5조 2항

-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. 다만,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.

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

-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"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"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(단순노무 종사자)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

분류코드	항목명
9	단순노무 종사자
93	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
930	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
9300	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
94	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
95	가사·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
952	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
953	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
9539	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

* 이 외의 직업 분류나 세부 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(통계청)에서 확인 가능